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6
----------	-----

제출년월일 : 202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친환경농어업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합분석실의 분석수행 항목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분석의뢰 및 분석업무 처리 절차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분석 거부 사유에 관하여 정함 (안 제6조)
- 분석결과 통지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 분석결과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하여 정함 (안 제8조)
-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
-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 면제에 관하여 정함 (안 제10조)

아. 종합분석실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정함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에 70,568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1. 10. ~ 2023.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2023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2023. 12. 14.)와 심의, 원안의결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센터 내에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및 가축분뇨일 경우에는 분석 의뢰용 시료 봉투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료 및 분석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외의 광고 등 금지)** ①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 기준을 적용하며, 징수절차는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0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평창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의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분 석 항 목(제2조 관련)

분 석 항 목 명	분 석 성 분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산도, 전기전도도, 석회소요량
2. 농경지 토양중금속성분	○ 아연, 납, 니켈, 구리, 총크롬(6가크롬), 카드뮴, 비소, 수은
3. 가축분뇨 퇴·액비	○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
4. 잔류농약 (생산단계 농산물)	○ 320성분(Acephate 외)

[별표 제2호]

분석의뢰 절차(제5조 관련)

신청자	처리기관	처리기한 30일 (분석여건에 따라 다름)
	농업기술센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                     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 →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접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분석실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분석결과서 작성</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결과통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접수: 수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분석 실제 소요기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분석완료 즉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 분석결과서 교부                 </div>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
<b>의뢰자 및 생산자 인적사항</b>		
의 뢰 자	성명 (농업인·기관·단체)	연락처
	주소	
생 산 자	<input type="checkbox"/> 의뢰자 인적사항과 동일	
	성명	연락처
	주소	
<b>시료의뢰 내역</b>		
시료채취 장소		재배면적
재배작물		채취일자
의뢰목적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인증(□유기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input type="checkbox"/> 영농활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과서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	
비고		
<p>의뢰인은 본인이 채취(수거)한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뢰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농업목적 이외의 민·형사상 등의 법적해결 수단이나 광고·선전 등의 상업적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div>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00-00호

##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

접수번호				
의 뢰 자	시료채취자		인증기관	
	주 소		접수일자	년 월 일
의 뢰 내 용	생산자		시료명	
	채취장소			
	분석성분			
	검사목적			
분석결과		검출성분명	검출량 ppm(mg/kg)	허용기준치 ppm(mg/kg)
<p>상기 분석결과는 의뢰인으로부터 접수된 시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의뢰목적 이외의 상업적 광고 및 법적 해결 수단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20    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p>				

※토양 및 가축분뇨 분석에 대한 결과는 흙토람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결과서를 통지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농산물직거래법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 6호 생략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

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제12조(정의)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농촌진흥청고시 제2021-26회)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단위 : 원)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 수 료
◎ 비료의 성분 및 물리성분석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고토, 망간, 아연, 동, 붕소, 철, 규산, 물리브덴, 알칼리분, 유기물, CEC, 칼슘, 초기용출율) ○유해성분(항청산화물, 설��파민산, 아질산, 카드뮴, 비소, 납, 수은, 크롬, 염삼불용해물, 니켈, 구리, 티탄, 아연, 염분, 염소, 뷰렛태질소, 아황산) ○부속도 - 콤팩법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4,300           16,000           43,800
◎ 농약잔류량분석	1약종	174,000
◎ 오염분석 ○토양(As, Ca, Pb, Cd)	1점 1성분	11,700
◎ 토양물리화학성분 ○토양화학성분(P2O5, CaO, MgO, pH) - 유기물 - 유효규산 - 석회소요량 - 양이온 치환용량	1점 1성분           1점 1점 1점 1점	9,900           21,600 30,200 17,000 30,400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관련조문: 조례안 제3조(운영·관리), 제9조(분석수수료)
- 나. 비용발생 요인: 종합분석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연1.4% 인상),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소요예산 항목별 적용

### 나. 추계 결과

- 세입: 37,080천원(수수료 부과대상인 경우)
  - 토양분석: 122,700원 × 100건 = 12,270천원
  - 가축분뇨분석: 74,100원 × 100건 = 7,410천원
  -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174,000원 × 100건 = 17,400천원
- 세출: 연간 세출예산 추계 아래 표 참조

내역	산출기초(2024년)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70,568	국비9,700, 군비60,868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101-04) : 기간제근로자 1명	23,168	군비23,168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특수건강진단비, 폐기물 처리비 등	15,000	국비3,500, 군비11,500
	공공운영비(201-02) : 시설장비 유지비	7,000	군비7,000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207-03) : 실험재료비	25,400	국비6,200, 군비19,200

다. 재원조달 방안: 국비 보조 및 자체 재원(2024년 당초예산 편성)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연락처	(033) 330 - 13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b>세 입</b>		<b>12,000</b>	<b>12,000</b>	<b>12,000</b>	<b>12,000</b>	<b>12,000</b>	<b>60,000</b>
가공장비 사용료 수입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b>세 출</b>		<b>143,000</b>	<b>143,450</b>	<b>143,920</b>	<b>144,390</b>	<b>144,870</b>	<b>719,630</b>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000	33,450	33,920	34,390	34,870	169,630
일반운영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재료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b>재원 조달</b>		<b>143,000</b>	<b>143,450</b>	<b>143,920</b>	<b>144,390</b>	<b>144,870</b>	<b>719,630</b>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3,000	143,450	143,920	144,390	144,870	719,63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143,000	143,450	143,920	144,390	144,870	719,63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